

# 서울대학교의과대학 석·박사학위 논문제출자격 시험 및 논문심사에 관한 규정

제정 2020.04.01. 내규 제316호

개정 2021.07.13. 내규 제332호

개정 2022.02.15. 내규 제33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원 논문제출자격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관한 시행 지침」 제5조 및 제5조의2에서 위임한 대학원 논문제출자격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이하 ‘논문제출자격시험’ 라 한다)에 관한 세부사항과 「대학원 학위논문심사 및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 지침」 제2조제7호에서 위임한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에 관한 별도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의과대학 주관 석사, 박사, 석사·박사통합과정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3조(논문제출자격시험 응시)** 논문제출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서울대학교 학위수여 규정」 제9조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고 별도의 절차에 따라 학위과정 별로 소정의 응시원서 등을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대학교 학위수여 규정」 제9조제5항에 따라 외국어시험을 면제 받은 경우에는 외국어시험 응시절차를 생략한다.

**제4조(석사학위 논문제출자격시험)** ① 석사학위 논문제출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각 전공(교실)의 학문적 특성에 따라 정해진 다음 각 유형 중 하나를 따른다. 단, 전공(교실)에서 시험 유형을 복수 채택한 경우, 학생이 시험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개정 2022. 02. 15.>

1. 전문학술지에 게재 또는 게재승인된 제1저자 논문 1편(원저논문) 요약 발표 <개정 2021. 07. 13.>

2. 전공지식 관련 구술고사

② 제1항제1호의 전문학술지는 SCI(E)/SSCI/AHCI, MEDLIN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에 한한다.

③ 논문제출자격시험 평가위원회는 2인 이상의 전임 및 기금교원으로 구성하여 전공(교실)별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박사학위 연구계획서)** ① 박사과정 학생은 입학 후 6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학문적 특성에 따라 연구계획서를 면제하고자 하는 전공의 경우에는 사전에 의과대학 대학원학사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연구계획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연구계획서심사위원회는 논문지도교수와 의과대학 전임 및 기금교원으로 구성하되, 학계·연구계의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선정된 심사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박사학위 논문심사까지 심사를 담당한다.

③ 연구계획서심사위원장은 연구계획서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학장에게 제출한다.

**제6조(박사학위 논문제출자격시험)** ① 박사학위 논문제출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 중 연구계획서 심사를 면제받는 전공의 학생은 제1호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연구계획서 심사를 실시하는 전공의 학생은 제2호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1. 전문학술지에 게재 또는 게재승인된 제1저자 논문 1편(원저논문) 요약 발표 또는 구술고사 <개정 2021. 07. 13.>

2. 전문학술지에 게재 또는 게재승인된 제1저자 논문 1편(원저논문) 논문지도교수 자체평가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전문학술지는 SCI(E)/SSCI/AHCI, MEDLIN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한한다.

③ 논문제출자격시험 평가위원회는 2인 이상의 전임 및 기금교원으로 구성하여 전공별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박사학위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 ① 박사학위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의과대학 논문작성 가이드라인(별표 1)을 준수하여 작성하되, 각 전공에서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국제저명학술지(SCI(E), SSCI, AHCI 등재 학술지)에 제1저자로서 게재한 연구내용을 포함한 논문을 학위청구논문으로 제출
  2. 국제저명학술지(SCI(E), SSCI, AHCI 등재 학술지)의 동료심사를 거친 연구논문 2편 이상에 상응하는 충실한 연구내용을 포함하고, 논문심사위원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 학술지 출판 이전의 심사용 제출논문만으로 학위청구논문 제출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전공에서 별도의 추가 요건을 정할 경우 의과대학 대학원학사위원회 심의를 받아 적용할 수 있다.
- ③ 각 전공에서 기 승인받은 논문심사 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2개 학기 이전에 의과대학 대학원학사위원회 승인을 받아 사전에 공표하여야 한다.
- ④ 박사학위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장이 정한 연구윤리 준수 사항 자체점검표(별표 2)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박사학위 논문 작성언어)** 박사학위논문 작성은 영어로 작성함이 원칙이나 학문(전공)분야별 특수성 및 논문지도교수의 의견에 따라 국문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9조(인정 논문의 범위)** ① 제4조 제1항제1호, 제6조 1항제1호 및 제2호의 원저논문은 Original Article, Letter, Brief Communication, Meta analysis, 학위 논문 주제와 연관되는 Review Article에 한한다. 단, 지도교수의 승인이 있는 경우 이 외의 논문도 원저논문으로 인정될 수 있다.

② 제7조제1항제1호의 국제저명학술지 제1저자 논문은 Original Article에 한한다. 단, 지도교수의 승인이 있는 경우 이 외의 논문도 Original Article을 대신 할 수 있다. <개정 2021. 07. 13.>

**제10조(정년에 따른 지도학생 배정 제한)** ① 논문지도교수는 정년퇴임 시까지 석사학위과정은 4학기 이상,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6학기 이상 지도할 수 있는 교원 중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정년 퇴임시까지의 지도 가능 기간이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대학원학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논문지도교수로 선정될 수 있다. <개정 2021. 07. 13.>

부 칙 (제316호, 2020.04.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도 3월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3년 제1차 전체교수회의의 의결사항은 2021년도 8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2조(폐지규정)** 「서울대학교대학원 의학과 석·박사학위논문심사 운영 규정」, 「서울대학교대학원 의학과 박사학위논문심사 운영 규정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다만 학내예비심사에 관한 사항은 2012학년도 전 박사과정에 입학한 학생이 모두 졸업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연구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당시에 연구계획서 심사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전공은 동 규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의과대학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각 전공 내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이 제정되기 전, 「서울대학교대학원 의학과 석·박사학위논문심사 운영 규정」, 「서울대학교대학원 의학과 박사학위논문심사 운영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각 전공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332호, 2021.07.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35호, 2022.02.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